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2] [국토교통부령 제547호, 2018. 10.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및 법인 간 합병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일 및 법인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영업 양도신고서 및 법인합병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신고서의 제출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에서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투입이 지연된 부분은 건설사업관리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실적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수인"을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대표자와"를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표자와"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이하 이 항에서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 5의3. 발주청의 배치계획 조정에 따라 철수한 경우

제56조제2항 중 "발주자의"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로, "발주자의 봉인"을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라 작성·통보한 품질검사 성적서 사본
 2.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 내용인 원시데이터(품질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제56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변경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변경등록 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한다)
 - 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1조·제23조·제63조의2,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자의 신고·변경신고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변경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을 양도를 하거나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간 합병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알록)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진 (3.5cm×4.5cm) 또는 사진인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주소			
	근로부	① 기간	구분	
② 직무분야	* ②란 직무분야의 예: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환경 등 영 제4조 별표 1의 제3호의 직무분야를 적습니다.			
③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④ 국가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⑤ 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훈련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첨부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증명사진(3.5cm×4.5cm) 1장(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사실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210mm×297mm [특상지(80g/㎡) 또는 중립지(80g/㎡)]

(뒤쪽)

행정정보 입영이후 영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법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입영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한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영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단의 민복무기간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실제 민복무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2. ②단의 직위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위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적은 직위분야는 향후 건설기술자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
3. ③단의 경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
4. ④단의 국가기술자격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공(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제1항 별표 1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
5. ⑤단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 기록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루은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일록)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④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 번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직무분야	⑪ 전문분야	⑫ 공사종류
	⑬ 담당업무	⑭ 직위	⑮ 책임정도
	⑯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	⑰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⑱ 착공일
		⑲ 준공일(예정일)	

※ ⑩ 공사(용역)개요, ⑪ 공사(용역)금액, ⑬ 착공일 및 ⑲ 준공일(예정일)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자나 인·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⑩⑪⑬⑰란은 의무 신고사항은 아니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건설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인·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필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취득)

작성방법

1. ㉠단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취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여 (변경사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의 회사명(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출자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여 (상호변경) 또는 (출자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단의 건설업(건축업, 토목업) 또는 전문직업(건축사, 토목사) 소속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종(예: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프랜차이즈·도장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 등)과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
5. ㉤단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단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가. ㉠단의 참여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항목일과 중공일을 보거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다만, 항목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계약·조사 등) 또는 중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나. 시공·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감리/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다.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여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니다.
-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이 경우 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단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9. ㉧단의 발주자(형)는 해당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10. 가. ㉨단 및 ㉩단의 직위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위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직위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위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함)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
 - 나. ㉨단의 전문분야는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예: 분사(건축사) 등)기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 11. ㉪단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등급인정기준"이라 한다) 별표 3 제4호 가목 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나목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12. ㉫단의 담당업무는 등급인정기준 별표 3 제3호가목의 건설공사업무란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 13. ㉬단의 직위는 해당 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어야 합니다.
 - 14. ㉭단의 책임정도는 건설공사 등에 참여한 책임정도에 따라 등급인정기준 별표 3 제3호나목 책임정도란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책임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 15. ㉮단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 16. ㉯단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공사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 예) 공사(용역)개요 : 도로확장 L=00km, B=0m(0차선), 사방교 : L=00m, B=0m, 터널 0개소 : L=0km, B=0m 등
 - * 공사(용역)개요 기저는 주요 공종만 최대 70자 이내(공백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17. ㉺단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 예) 공사(용역)금액: 600백만원
 - 18. ㉻단의 항목일 및 ㉼단의 중공일(예정일)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의 운영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 19. 기술경력(기저사항 중 ㉠, ㉡, ㉢, ㉣, ㉤, ㉥)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외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④ 해외건설업종(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국외 기술경력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국	⑩ 발주자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기타		
	⑪ 직위분야		⑫ 전문분야	
	⑬ 담당업무(책임정도)			
	⑭ 공사종류(주 공종)	⑮ 직위	⑯ 공법	
	⑰ 공사지역(국가명)	⑱ 착공일	⑲ 준공일(예정일)	
	⑳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 포함)		㉑ 공사(용역)금액(백만원)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에 대한 국외공사(용역)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또는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건설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수의 국외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외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국외 경력확인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5.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뒤쪽)

작성방법

1. ①항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타인이 또는 날인하는 경우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항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항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④항의 해외건설업종(등록번호)은 소속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외건설관련업(예: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전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등)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항의 입사일은 소속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항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고, 현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가. ⑦항의 참여기간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해외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계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 등 해외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타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이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할 때에는 해당 경력사항을 같은 후 종료일을 적어 참여기간 외에 별첨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야 합니다.
- 작성 예) 201x년 1월 26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6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6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⑧항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등의 계약명 또는 실적증명서(「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를 말합니다)에 표기된 공사명을 적으면 됩니다.
 9. ⑨항의 발주국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발주처(기관)가 소속된 국가명을 적으면 됩니다.
 10. ⑩항의 발주자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하시고 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는 []에 표시를 합니다.
 11. ⑪항 및 ⑫항의 직위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직위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직위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위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12. ⑬항의 담당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등급인정기준"이라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의 건설공사업무만 및 나목의 적임정도(해당하는 자에 한정합니다)만을 참고하여 적으면 됩니다.
 13. ⑭항의 공사종류(주 공종)는 등급인정기준 별표 3 제4호 가목 건설공사의 공종 또는 나목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주 공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에 참여한 주요공종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종류: 공항(활주로)
 14. ⑮항의 직위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으면 됩니다.
 15. ⑯항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6. ⑰항의 공사지역(국가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진 국가명과 시(市)까지 적으면 됩니다.
 17. ⑱항의 착공일 및 ⑲항의 준공일(예정일)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의 용역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18. ⑳항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해외건설공사의 공사개요를 70자 이내(공백포함)에서 간략히 적으면 됩니다.
작성예) 해외공사(용역)개요: 본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활주로 중심 공사로 주 활주로 2곳(총 1.4km)을 연장하였음
 21. ㉑항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통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 공사의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변경등록	25일 10일
상호 또는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국적		
신청인	전문분야			
	종합: [] 종합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말뚝재하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기술인력		
	총 명 (특급: 명, 고급 이하: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장비(필요시)			
따로 붙임			
시험실(필요시)			
소재지		면적	m ²

변경 등록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텍상지(80g/㎡) 또는 중집지(80g/㎡)]

(뒤쪽)

제출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첨부 서류	<p>등록</p> <p>[제출서류(제5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 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p>변경등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